

4.2.2 석좌교수임용규정

제정 1999. 11. 01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석좌교수의 임용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,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·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자격)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 한 자
2. 특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
3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
4. 기타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4조 (임면) ① 외부로부터 초빙되는 석좌교수는 부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학과(부)장 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전항의 절차에 따라 계속 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 (처우) 석좌교수의 처우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계약시에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세부사항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